

연구원 임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 연구소(센터) 및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규정에 규정된 연구원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원이라 함은 전문분야 연구, 교육 및 컨설팅사업을 목적으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규정에 따라 본교의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연구원, 연구보조원,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7. 22)

제4조 (자격기준)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라야 한다.

1. 상임연구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1개의 연구기관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비상임연구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별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객원연구원 : 본교 이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4.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5. 박사후연구원(Post-Doc.) :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6. 전문위원 : 학력과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의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한다.
7. 연구보조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신설 2013. 7. 22)

제5조 (임용·위촉) ① 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연구보조원은 연구기관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단,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기관은 산학협력단 내규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3, 2013. 3. 1, 2013. 7. 22, 2014. 12. 22)

②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위원은 연구기관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2. 28, 2012. 10. 23, 2013. 3. 1, 2014. 12. 22)

③ 연구기관장이 제1항에 의한 연구원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임용예정일 1개월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013. 3. 1, 2014. 12. 22)

1. 연구원 임용추천서
2. 연구원 활용계획서
3. 이력서
4. 연구계획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임용 또는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부서장의 평가에 의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7. 9. 1)

⑤ <삭제 2017. 9. 1>

⑥ 재임용 시 소속부서장의 재임용 요청이 없거나 해당 사업(과제)이 중단되었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신설 2017. 9. 1)

제6조 (처우) ① 연구원의 인건비는 각 연구기관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며,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거 연구기관장이 책임 관리한다.

② 연구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중앙도서관 등 학내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③ 삭제 (2010. 9. 1)

④ 연구원에게는 4대보험 가입을 해당 연구기관 부담으로 적용하며, 그 세부조건은 해당 연구기관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0. 9. 1)

제7조 (임무 및 준수사항) ① 연구원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본교의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임용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출강 또는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⑤ 연구원은 임용 즉시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통보한다. (신설 2010. 9. 1)

⑥ 연구원은 대학에서 지시하는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신설2010. 9. 1)

제8조 (해임·해촉)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그 직권으로 해임할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9조 (강의) 연구원은 소속 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본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

제10조 (제증명) 연구원에게는 본교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또는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